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14459
결재일자	2015.8.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치운영담당	자치행정과장	행정국장
강길원	이철암	代이철암	08/03 손정수
협 조 자			

2015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유공자 공로패 수여계획

2015. 8

행 정 국
자치행정과

2015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유공자 공로패 수여계획

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또는 동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동 주민자치위원회 ·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주민자치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(조례 제896호, 2011.12.31제정)
- 2015 유공구민 구청장표창 운영 계획(자치행정과-1628, 2015.01.27)

II 개요

- 훈 격 : 구 청 장
- 대 상 : 6명

대 상	직 책	수 여 사 유	비 고
박노현	前 장위3동 주민자치위원장 ('13.08.01 ~ '15.07.31)	○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자치위원장 협의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이바지하였으며, 장위3동 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	공로패 수여
한종열	前 장위1동 주민자치위원장 ('13.08.01 ~ '15.07.31)	○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자치위원장협의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이바지하였으며, 장위1동 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	

김형태	前 안암동 주민자치위원장 ('13.08.01 ~ '15.07.31)	○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감사 로서 자치위원장협의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이바지하였으며, 안암동 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
정해숙	前 돈암1동 주민자치위원장 ('13.07.21 ~ '15.07.20)	○ 제7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사무국장 으로서 자치위원장협의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이바지하였으며, 돈암1동 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
박동운	前 보문동 주민자치위원장 ('13.10.14 ~ '15.07.31)	○ 보문동 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
이무자	前 길음2동 주민자치위원장 ('13.08.01 ~ '15.07.31)	○ 길음2동 자치위원장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공로가 인정됨

□ 시 기 : 2015. 8. 17 (월) 제8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시

III 추진절차

□ 공적심의 여부 : 생략

● 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 (조례 제896호, 2011.12.31)

- 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

- 제12조(포상절차)

② 표창장, 성북구민대상, 자랑스러운 성북인상 및 유공공무원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다만,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IV

공직선거법 검토결과

□ 관련조항 (공직선거법 112조 / 113조)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
- ① 이 법에서 "기부행위"라 함은 당해 선거 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

제113조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)

- ①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없다.

□ 예외적 허용 (공직선거법 112조)

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2. 의례적 행위

자. 읍·면·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·예술·체육행사,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(부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·시·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(향우회·종친회·동창회, 동호인회,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)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. 다만, 제60조의2(예비후보자등록)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

□ 검토의견

● 법령에 근거 : 충족

- 법령에 따라(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) 수여
- 법령에 근거한(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) 단체

● 의례적 실시 여부 : 충족

- 성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에 따라 매월 정기회를 개최해오고 있음.

● 상장의 범위에 공로패가 포함되는지 여부 : 충족

- 선관위 질의응답 회신 내용

질의내용	회신내용	질의일자
「공직선거법」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에 표현된 상장이나 표창의 의미가 반드시 종이로 제작된 형태만을 뜻하는 것인지, 아니면 상패·트로피·감사패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는지?	귀문의 경우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, 통상적인 상패·트로피·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을 것임.	2005.8.25

※ 질의응답 세부내용은 ‘붙임1.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’ 참고

□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

본 공로패 수여는 공직선거법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

붙임 : 1.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.

2. 공로패(안). 끝.